

<p>되어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노력해도 최저거래기준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제재까지 받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p> <p>○ 그러나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의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p> <p>양곡도매시장의 설립취지가 도매시장 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주식인 미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부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공영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유사도매시장의 상인에 비해 적정수준의 규모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하고, 500가마(가마/80kg)를 최저거래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양곡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백미 1가마당 판매마진이 약 1,500원 수준이므로 월간 500가마 이상 판매하여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정한 것이며, 양곡부류의 거래에 있어서는 청과나 수산부류와 같은 거래금액에 대한 마진 개념보다는 거래물량(가마)에 대한 가마당 마진개념이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에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는 의견임.</p> <p>○ 최저거래기준을 2,500만원으로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양곡도매시장의 본래의 설립취지에 배치된 도매시장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관리공사의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중도매인들의 영세화가 우려된다는 것임.</p> <p>○ 그 이유로는 양곡도매시장의 설립취지가 미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부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있는데도 수입참깨공매 참여만으로도 월간 거래실적 유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점포 및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사용료를 내지 않는 수입참깨 거래에만 치중하게 될 것임.</p> <p>○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측의 견해가 서로 달라 합일점을 찾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중도매인들의 생계유지 및 보호차원과 도매시장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향과 관리공사의 경영수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신</p>	<p>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5. 질의 및 답변: 생략</p> <p>6. 수정안 요지(수정동의안 제안자: 김성호 의원)</p> <p>○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제1호 양곡부류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양곡거래단위는 물량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기준 2,500만원(법인은 1억원)을 400가마/80kg(법인은 2,000가마/80kg)으로 수정하고자 함.</p> <p>7. 심사결과: 수정가결(채석 14명, 만장일치)</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7년 11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p> <p>1. 회부안건</p> <p>○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p> <p>2.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7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시장</p> <p>나. 회부일자: 1997년 10월 25일</p> <p>다. 의안번호: 제913호</p> <p>라. 상정일자: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97.11.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p> <p>3. 제안설명요지(지역경제국장: 조성두)</p> <p>□ 제안이유</p> <p>가. 1997.7.1.부터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와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하고,</p> <p>나. 새로이 제정·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점포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 주요골자</p> <p>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p>
---	---

<p>등에 대한 권고(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등으로 함.(안 제2조)</p> <p>나. 위원회는 위원장(지역경제국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비자보호과장, 중소기업과장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서울특별시 지역의 소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3조)</p> <p>다.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p> <p>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p> <p>마.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및 도·소매업진흥법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p> <p>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97.7.1)됨에 따라 구법에 관련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 새로이 제정 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과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시행령 제22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구법의 폐지와 신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심의회기 위한 것이므로 마땅히 조례를 제정하여 약·소자를 보호해야 할 것 	<p>이며, 설치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5. 질의 및 답변:생략</p> <p>6. 소수의견:없음</p> <p>7. 심사결과:원안가결(재석 14명, 만장일치)</p> <p>8. 기타사항: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7년 11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p> <p>1. 회부안건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p> <p>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7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나. 회부일자:1997년 10월 30일 다. 의안번호:제928호 라. 상정일자: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97.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97.11.10) 질의·답변, 원안가결</p> <p>3. 제안설명요지(환경관리실장:탁병오)</p> <p>□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사변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참전용사의 공원이용시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의 서비스 향상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p>□ 주요골자</p> <p>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의 공원 이용시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p> <p>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p>
---	---